계약-5 코로나19 관련 납기지연 지체상금 면제 신청 입증자료 완화

【 건의요지 】

-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부품 조달지연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면제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을 완화**해 줄 것을 검토 요청

○ 귀 사의 건의사항은 코로나 19 등으로 해외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한 경우의 입증자료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면제신청 시 **공식문서 제출 없이도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 19를 직접 원인으로 인한 지체 발생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위사업청도 해당 지체의 원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필요**하므로 제출 자료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업체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2 >

붙임자료 **관련 규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면제 등) ①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나.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다.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라.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마.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바.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사.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아.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자.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